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4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57033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가 2020. 9. 25.[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토지분 취득세 26,814,100원, 지방교육세 2,681,410원, 건물분 취득세 18,421,350원, 농어촌특별세 12,484,060원, 지방교육세 821,7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을 '2020. 9. 29.'로 특정하였으나, 처분서(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2020. 9. 25.'의 오기라고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4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26.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 9. 11. ○○시 B 공장용지 1652.1㎡(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201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1.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7. 14.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용지 지상에 2544.93㎡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980,000,000원, 공사기간 2014. 7. 23.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일은 2014. 5. 27.이고, 착공일은 2014. 7. 23.이며, 사용승인일은 2015. 6. 17.이다.

마.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8항에 따른 75%의 경감율을 적용받아 2015. 8.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18,421,350원, 농어촌특별세 12,484,060원, 지방교육세 821,730원을 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부속토지 249.72㎡에 관하여 취득세 26,814,100원, 지방교육세 2,681,41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0. 8.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부속토지에 관한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4

3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감면 경정을 청구했다.

사. 피고는 2020. 9. 25. '취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인 2015. 6. 17.이고, 원고의 창업일은 2010. 7. 26.이므로, 원고의 창업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21.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7.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2. 10. 11.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위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15. 6. 1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12.31.) 제1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4

있고, 납세의무 성립의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원인행위, 즉 사업용 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착공, 계약금 및 기성금 지급 등은 종전 규정이 2014. 12. 23. 삭제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납세자의 기득권 및 신뢰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4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관계 법령과 처분 경위,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종전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고(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다[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은 2015. 6. 17.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일 : 2015. 1. 1.) 제58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개정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한편, 종전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2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고, 위 제119조 제2항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창업일'로 의제하면서 '이하 같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이하 이 조에서 무엇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무엇이라 한다', '이하 무엇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해당 취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4

제2항 이하의 조항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종전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일'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3) 종전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2012. 10. 11.로부터 4년 이내인 2015. 6. 1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2014. 12. 31.까지 시행된 종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반면 이 사건 개정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인 2012. 10. 11.로부터 4년 이내인 2015. 6. 1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불리한 개정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종전 규정 적용 당시인 2014. 5.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7. 23. 착공하였으며 2014년도에 전체 도급금액 1,980,000,000원 중 946,100,000원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으며, 2015. 1. 19.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공정율은 42.15%였으므로,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납세의무 성립 전에 이루어진 경우인 점, 종전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어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4

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전부를 면제하는 규정은 1999. 8. 31. 처음 신설된 이후 2014. 12. 23. 해당 조문이 삭제되고(시행일 2015. 1.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신설 이관되기 전까지 계속 존속하였던 점(2007. 12. 31. '창업일부터 2년'에서 '창업일부터 4년'으로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4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9-14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955호, 2014.12.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